
「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」
운영 규정 및 심사 지침 주요 변경 사항



1.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절차/기준 주요 변경사항

○ 본 자료는 국가정보화기본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미래부 고시,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운영지침,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요강 등에 의거 지정된 「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」의 품질인증 절차 및 운영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및 신설된 규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
영역	변경 전	변경 후
자동 진단 도구	○ 자가진단은 웹접근성 품질마크 자가진단 서비스, K-WAH4.x 중 한 가지로 실시한다	○ 자동진단도구의 최신버전 으로 실시한다
심사 지침	○ 한국형 웹접근성 콘텐츠 지침 2.0 (KWCA2.0)	○ 한국형 웹접근성 콘텐츠 지침 2.1 (KWCA2.1) ○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운영 지침(151030)
심사 환경	○ Internet Explorer 8	○ Internet Explorer 11
기술 심사 기준	○ 기술심사는 고시에 따라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진행한다. ② 전문가심사는 1차 불합격 시 신청인에게 수정유예기간을 주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2차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.	○ 기술심사는 1차 심사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의 경우는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① 전문가심사 결과 18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95% 이상 준수한 경우 ② 전문가심사 결과 전체 검사항목 평균 준수율이 85%이상 인 경우 ③ 사용자심사 결과 과업 성공률 85%이상 인 경우
사용자 심사 기준	○ 합격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제시된 모든 과업에 대해 과업별로 15분 이내 에 수행 가능한 경우로 한다.	○ 10개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 각 과업당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모두 성공하면 통과한 것으로 본다. ① PC웹 : 센스리더 또는 죠스, NVDA 등 화면낭독 프로그램에서 1종 이상 사용가능 하면 성공 ② 모바일 웹 : Voiceover(iOS)와 Talkback(Android) 등에서 동시에 사용가능 하면 성공. 단, 모바일 웹 접근성에서 과업 수는 PC웹 기준의 50%
보조 기기 버전 기준	○ 규정 없음	○ PC웹 : 센스리더 최신버전 또는 죠스, NVDA 등 최신버전 ○ 모바일 웹 : i-OS Voice Over, Android Talk Back 등의 최신버전
유예 기간	○ 신청인은 전문가심사의 1차 심사 에서 불합격 된 경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7일간의 심사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.	○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7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2차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단, 시스템 운영 특성으로 인해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 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와

		협의할 수 있다.
2차 심사 기준	○ 인증기관은 심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차 심사 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을 변경되어 심사할 수 있다.	○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정한 샘플링의 최소 20% 이상의 페이지 또는 콘텐츠를 신규로 선정 하여 실시할 수 있다.
합격 기준	○ 합격 기준은 선정된 유형 모두가 권고 이상이어야 하며, 1유형은 22개 검사항목이 권고 이상이어야 한다.	○ 인증심사 적합 기준은 기술심사에서 실시한 전문가심사는 모든 검사항목에서 95%이상 준수 해야 하고, 사용자심사는 과업 성공률이 100% 가 되어야 한다.
갱신 기준	○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갱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,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.	○ 갱신은 반드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 해야 하며, 신청 후로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○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청 이후 1개월을 넘기도록 비용 입금 등의 이유로 심사 진행을 하지 못한 경우 갱신 조건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신규심사대상으로 전환된다. ○ 인증심사완료일과 상관없이 갱신의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모니 터링	○ 인증기관은 인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지, 신규심사, 갱신심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. ○ 모니터링은 자동평가로 1차 검증을 하고 전문가평가 2차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, 2차 검증은 자동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.	○ 인증기관은 인증취득기관이 품질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인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실시 해야 하며, 해당 결과를 사후관리 모니터링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 ○ 모니터링은 자동점검도구를 이용해 10페이지 이상 실시 를 권장하고, 필요시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를 포함해 대표적인 유형 3페이지 에 대해 전문가 심사원 1인 이상이 수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.
인증 취소	○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, 재심사, 신규심사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○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심사, 신규심사 결과 불합격이 된 경우 ○ 인증심사 범위를 벗어난 연계사이트, 별도사이트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허위 홍보하는 경우 ○ 인증심사비 납부를 확약하였음에도 인증심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	○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개선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개월 이내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○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○ 인증 범위, 유효기간의 허위 표시 및 인증서의 오용 ○ 인증취득 후 신청인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

2. 심사 대상 사이트 규모 선정 기준

○ 운영규정

- 심사 대상 사이트 샘플 페이지 및 과업 산정 최소 기준

구분	전문가심사 샘플 페이지 수	사용자심사 샘플 과업 수	비고
신규	$2.5 \times \sqrt{\text{전체페이지수}}$ 이상 권장	10개 이상 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문가심사는 전체페이지 수에 따라 각 샘플 페이지 수 공식으로 계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▶ 사용자심사는 10개 이상으로 샘플 과업 수를 선정 권장
갱신	신규의 50% 이상 권장		

○ 웹와치 전문가 심사 샘플링 수 및 사용자 심사 과업 수

사이트 규모 구분	전문가 심사 샘플링 수	사용자 심사 과업 수
S1 : 0p ~ 30p	14p+	10개+
S2 : 31p ~ 50p	18p+	10개+
S3 : 51p ~ 100p	25p+	10개+
M1: 101p ~ 150p	31p+	11개+
M2: 151p ~ 200p	35p+	11개+
M3: 201p ~ 300p	43p+	12개+
L1 : 301p ~ 400p	50p+	12개+
L2 : 401p ~ 500p	56p+	13개+
L3 : 501p ~ 600p	61p+	13개+
특수 및 대형	사이트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최소 $2.5 \times \sqrt{\text{전체페이지수}}$ 이상 산정	

※위 기준은 표준심사 지침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, 사이트 특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음

3. 심사 수수료

○ 운영규정

- 수수료는 사이트의 특성과 난이도, 당시 상황 등이 고려되어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 만 샘플 페이지 및 과업 수와 비례한 수준으로 책정한다.
-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이트의 경우 샘플 페이지 수를 더하거나 제경비 등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.

○ 웹와치 심사 수수료

사이트 규모 구분	최소 샘플링 수	심사 단가 및 비고
S1 : 0p ~ 30p	14p+	* 신규심사 기준 기본 단가 - S1 : 100만원 ~ L3 : 300만원 - 갱신심사, WA·MA·SA 동시진행, 기관 및 사이트 특성 등 여러 조건 따라 기본 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 * 페이지 산정 기준 - 신청 사이트 범위 내 페이지만을 기준으로 함 - 읽기 전용 게시판 1개는 2p로 계산 - 쓰기 가능 게시판 1개는 3p로 계산
S2 : 31p ~ 50p	18p+	
S3 : 51p ~ 100p	25p+	
M1: 101p ~ 150p	31p+	
M2: 151p ~ 200p	35p+	
M3: 201p ~ 300p	43p+	
L1 : 301p ~ 400p	50p+	
L2 : 401p ~ 500p	56p+	
L3 : 501p ~ 600p	61p+	
특수 (601p 이상 및 규모와 무관한 특수 사이트)	$2.5 \times \sqrt{\text{전체페이지수}}$ p+	- 개인, 홍보, 단순 정보 제공, 기관(기업)의 대표 등의 목적이 아닌 온라인 서비스 (전자 시스템)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- 예: 포털, 쇼핑, banking, 보험, 증권, 카드, E러닝(교육), 언론(미디어), 전자민원, 예약/예매 등 복잡도 높은 전자 시스템 사이트 등

4. 심사 수수료 감면 대상 및 조건

○ 운영규정

- 서면심사가 생략되는 재심사와 인증품질을 유지한 갱신심사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.
- 사회공헌 차원에서 비영리 장애인기관 및 단체,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사이트는 수수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.

○ 웹와치 수수료 감면 대상·조건·비율

감면 대상·조건	설명	감면 비율
갱신심사	-기간만료 및 개편 등으로 인증을 갱신하는 사이트	30% ~ 40%
웹와치 인증 경험	-1년이내 웹와치 인증 1회 이상 : 10% -1년이내 웹와치 인증 3회 이상 : 15%	10% ~ 15%
협력업체 및 기관	-웹와치를 통해 다년간 다수 사이트를 인증한 기관 -다년간 웹와치와 협력해 온 개발 및 컨설팅 업체 -WA 외 MA·SA 분야를 협력한 개발 및 컨설팅 업체	30% ~ 35%
감면기관	-사회적 기업, 마을 기업, 협동조합, 장애인 기업 -장애인 기관 및 단체, 복지 기관 및 단체 (공법인 및 법정기관 제외, 기타 조건 무관)	50%
동시신청	-2건 이상 대상을 동시 진행하는 경우	5% ~ 10%
중복조건	-위 감면기관을 제외한 항목에서 중복 해당 될 시 신규심사 최대 30%, 갱신심사 최대 40%까지 적용 가능	-